

## 201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방형직위(감사관) 임용시험 공고

2016년 제1회 개방형직위(감사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11. 18.

인천광역시부평구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직위 및 주요업무

임용직위	임용직급	선발인원	주요 업무 내용
감사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입기제공무원 (5급 상당 개방형)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본청, 산하기관·단체 등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 조치</li> <li>○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행정기관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li> <li>○ 일상감사, 계약심사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li> <li>○ 비위신고 및 접수조사 처리</li> <li>○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및 조치</li> <li>○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li> <li>○ 그 밖에 감사에 관한 사항</li> </ul>

※ 임용기간 : 2년 (성과에 따라 3년 추가연장 가능)

### 2.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근무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용기간동안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3.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제한은 없으나,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역 : 제한 없음.

※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1. 우리국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 다.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업무,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 라.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경우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나.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외)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
(2)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서 재직 중인 공무원
8.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 형식요건 심사
  - 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1차 형식적 요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심사

## 5. 응시원서 교부 · 접수

-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 : 2016. 11. 28.(월) ~ 12. 02.(금), 5일
- 교부(접수)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총무과(인사팀) 5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단 12:00~13:00 제외)내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6.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부착
  - 응시수수료 : 10,000원,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 부착  
(부평구청 1층 하나로민원관에서 구입)
-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③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내외, 경력중심으로 작성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내외, 요약서 2매 이내)
  - ※ 특별한 서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기술
-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이하인 경우 졸업장 사본 가능

##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응시자격요건 입증 가능한 경력증명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일 경우 불요

## ⑧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⑨ 서류전형 자격요건 체크(응시자 의견) 1부

## ⑩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및 실적 증빙 자료

-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 학위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하고, 2점 이내로 한정

###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 바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자격증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최종 합격 시 사실 공증)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 지참

## 7. 시험일자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8.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의함.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2, 5호 등급 하한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천원)

연봉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5호	73,176	41,591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복무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따릅니다.
- 응시자가 1인 이하일 경우, 7일 이상 연장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총무과 인사팀(032-509-6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